

『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3. 11. 26 구미시도시계획조례 공포 운영 중,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, 2004. 1. 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, 조례에 반영할 사항과,

2004. 4. 8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에 따른, 읍·면 및 신규편입 지역 문제점등의 대책을 강구하여,
-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,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,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(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·성토·매립·토사의 채취) 삭제
- 개발행위 허가 시,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면적 용도지역별로 구체화 (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50% 선으로 조정)
-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토록 개정
-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허용 (신축은 제외)
-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개정

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
-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수 없도록 개정 (단,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)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(공장부지 면적 산정방법변경 및 일반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) 반영
- 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수 없도록 개정 (단,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) 및 모든 창고시설 설치 가능토록 조례개정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기존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(2004. 1. 20)사항 및 2004. 4. 8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고시에 따른, 읍·면 및 신규편입 지역의 문제점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이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,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(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·성토·매립·토사의 채취) 삭제
 - 개발행위 허가 시,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면적 용도지역별로 구체화 (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50%선으로 조정)

-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토록 개정
 -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허용 (신축은 제외)
 - 준공업지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개정
 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세차장의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
 -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개정(단,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)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(공장부지 면적 산정방법 변경 및 일반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) 반영
 - 관리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개정(단,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은 가능) 및 모든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,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,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